

월간 의정정보 2011-1호

1. 최근 제·개정 주요 법령 2
2.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21
3.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58
4.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73
5. 행복한 책임기 91

모 두 보 기

최근 제·개정 주요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5)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11) / 고용보험법 시행령(13) / 도로교통법 시행령(18)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22) /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26)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32) /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조례(36) /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43) /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48) /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52)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59) /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돕는다(62) / 알고 싶은 행정기관 정보, 클릭 한번으로 내 손에(64) / 구제역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66) / 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68) / 숨어있는 미환급금, 한번에 찾아낸다(71)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제(74) / 공정거래·금융조달(77) / 산업(77) / 환경·국토(78) / 보건복지·여성(82) / 고용·노동(84) / 법무·행정안전(85) / 통일·국방·병무(87) / 교육·문화(87) / 농식품·산림(89)

행복한 책임기

행복한 고집쟁이들(91)

최근 제·개정 주요 법령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3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11
5. 고용보험법 시행령 13
6. 도로교통법 시행령 18

[공포 2010. 12. 27 시행 2012. 7. 1]

1. 제정 이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그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등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법적 지위(안 제5조)

- 1)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함.
- 2)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함.

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안 제6조)

- 1)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 등 일원,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등 일원 및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으로 함.
- 2)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충청남도 연기군은 폐지함.

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범위(안 제7조 및 제10조)

- 1)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 2)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 1)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 2)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1. 1. 4 시행 2011. 10. 5]

1. 제정 이유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또는 주간보호 등의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안 제5조)

- 1)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추도록 함.
- 2)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안 제8조, 제9조 및 제11조)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장애인단체 대표 및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를 판정하도록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자 선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등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도록 함.

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안 제16조)

-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및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구분함.
- 2)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를 세분화함으로써 수급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급여 제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등(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4조)

- 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타당한 사유 없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2)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지정과 의무사항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 1) 수급자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 등의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은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일정 자격 등을 갖추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및 성범죄자 등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등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함.
- 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문적인 활동지원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활동지원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안 제33조)

- 1) 수급자는 해당 활동지원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등의 생활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함.
- 2)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급여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담능력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비용의 부담(안 제39조)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시·군·구가 분담하도록 함.

- 2)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4호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0. 12. 30 시행 2011. 1. 1]

1. 제안 이유

지방세 감면 총량제를 도입하고, 지방세 감면기한이 연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0417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총량 산정비율을 정하고, 사회적 취약 계층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율 인하·조정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의 농지 취득 및 친환경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등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2251호, 2010. 7. 6. 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세 감면 총량제 도입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의 산정방법을 규정함(안 제2조제7항 및 제8항).

- 1)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2)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 3) 지방세 감면 실적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하도록 함.

나. 지방세 감면을 인하·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46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지방세 감면 기한이 연장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나 공익 목적 등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인하·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2)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경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와 국가유공자가 관련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그 감면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조정할 수 없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0. 12. 31 시행 2010. 12. 31]

1. 개정 이유

특별대책지역에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초과부과금 산정 시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정량을 초과배출량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 기간, 징수유예기간 등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 설치 제한 기준 개선(안 제12조제2호)

1)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배출시설의 규모(황산화물 등 연간 합계가 10톤 이상)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의 설치는 허용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고, 특별대책지역을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중 규제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특별대책지역이라 하여도 총량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황산화물 등의 발생량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대기개선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우수 사업장에 대한 초과부과금 산정의 특례(안 제25조제5항 및 별표 5의2 신설)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 사업장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초과배출량을 산정할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은 그 실적에 따라 초과배출량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함.

다. 배출부과금의 조정신청 기간 연장 등(안 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및 제4항)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기간을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고,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를 연장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0. 12. 31 시행 2011. 1. 1]

1. 개정 이유

보수는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990호, 2010. 1.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과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그 명칭과 지원 요건을 정비하며, 임금피크제의 유형별로 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수준을 정률제로 개선하고 고용과 연계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용환경 개선 등 고용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창출 지원사업 정비(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삭제, 안 제17조 신설)

1) 현행 교대제전환 지원금, 중소기업의 고용환경 개선 및 전문인력 활용에 대한 지원은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출하도록 하고 있어 경제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평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원 요건 개선(안 제19조)

1) 사업주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후에 피보험자를 이직시켰다가 다시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지원금을 받는 등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함.

2)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요건인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할 기간을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로 확대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원금 지급 요건을 개선함.

3)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원금 집행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내용 개선(안 제25조)

1)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그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어 고령자 고용촉

진 장려금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의 명칭을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고령자 다수 고용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폐지하며,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의 내용을 정비함.

라.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 개편(안 제26조)

1) 현행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는 지원요건을 단순히 실업기간으로만 판단함에 따라 실업자 취업지원 사업과의 연계가 미흡하고, 장려금의 종류가 많고 지원요건이 복잡하여 민원인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명칭을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정함.

3) 제도 개선을 통하여 취업애로 계층의 신규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내용 정비(안 제28조)

1) 다양한 임금피크제의 유형에 맞게 지원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임금피크 시점을 50세 이후로 명시하고,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소

정근로시간이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100분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하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이 57세 이상인 사업장의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55세 이후 또는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여 각 임금피크제 유형별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고령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피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제도의 개편(안 제29조, 안 제30조 삭제)

1) 임신·출산여성의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단일사업으로 통합·운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임신·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등장려금, 대체인력 채용장려금을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통합하고, 출산 후 1년 이내에 기존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육아휴직 등의 허용에 따른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정함.

3) 임신·출산여성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사.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안 제56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으로 정하고 있어서 지급 제한의 운영이 경직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고,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부정수급액 등 부정행위의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제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식 개선(안 제95조)

1) 현행 육아휴직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선하여 지급수준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고용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되, 그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고, 육아휴직급여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함.

3) 육아휴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의 직장복귀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 2010. 12. 31 시행 2011. 1. 1]

1. 개정 이유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담당하던 운전면허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주·정차 단속(안 제12조, 안 제8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도지사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같이 소방공무원 등을 주차·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할 수 있게 함.

2) 이에 따라 현행 특별시장·광역시장과 동일하게 도지사가 불법 주차·정차 차량을 단속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한 위반사실 증거서류 등을 통보하도록 함.

나.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 등(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및 제86조 등)

1) 법률에서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담당하던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 등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교부 등 업무 일부를 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적성검사를 담당하게 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등의 업무와 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하도록 함.

다. 도로교통공단 부대사업의 범위(안 제79조의2 신설)

도로교통공단 부대사업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부대사업으로 자동차운전교육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함.

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지정·관리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86조)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의 권한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등에게 이양함.

마.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법(안 제89조 신설)

1) 법률에서 국민들의 과태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1회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포함하여 200만원으로 정하고,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하여 정함.

바. 경미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안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1) 법률에서 운전면허증 미휴대, 유아보호자의 유아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고, 자동차 창유리 압도기준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준수 사항 위반 및 운전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미필 등 5개의 경미한 행정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됨.

2) 이에 따라 범칙금액표에서 이들 사항에 대한 범칙금을 삭제하는 대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의 범칙금액과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규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22
2.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촉진 조례 26
3.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2
4.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자원조례 36
5.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43
6.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48
7.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52

1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1. 제안 이유

○ 노숙인 보호와 자활지원 등을 통한 사회복귀 활성화로 우리 사회의 최극빈층인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의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 하며, 노숙인에 대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증가하고 있는 노숙인의 생계유지 및 자활대책을 능동적으로 강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노숙인보호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3조)

나. 노숙인의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3년마다 1회 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함(안 제8조)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이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쉼터”란 규칙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상담보호센터”란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숙인보호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년마다 노숙인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숙인보호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숙인 보호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노숙인 상담·급식·보호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숙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에 관한 사항
5. 쉼터 입소 등 노숙인의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쉼터 및 상담보호센터 등(이하 “노숙인보호시설”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숙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을 위해 매년 노숙인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노숙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노숙인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노숙인에 대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급식 및 의료지원 서비스
3. 노숙인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서비스
4. 쉼터 입소 등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서비스
5. 그 밖에 노숙인의 보호 및 자활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노숙인을 지원할 때에는 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숙인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보호를 위하여 노숙인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숙인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노숙인보호시설의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노숙인 보호 및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노숙인보호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숙인보호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노숙인보호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수교육) 시장은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노숙인보호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 이유

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나. 「지역내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구매대상 시설 및 기타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일반인에 비하여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필요한 지원 및 시책 추진과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등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7조)

다.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0조)

인천광역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1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① 시장은 시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2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

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 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매 협조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공공기관 및 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 이유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에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안 제6조).
- 다. 실무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피해신고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남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①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대구광역시 소속의 4급 지방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 이유

-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과 범위(안 제3조)

-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함.

나. 위원회의 심의(안 제4조)

- 의로운 시민의 인정과 특별위로금 지급,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함.

다. 특별위로금의 지원(안 제7조)

-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예우 및 지원사업 등(안 제8조)

-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광주광역시 조례 제 호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로운 시민”이란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의로운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절도·폭행·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

나.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다.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및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

- 라.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한 행위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 3. “부상과 피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신체상의 부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 4. “가족 또는 유족(이하 “가족 등”이라 한다)”이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과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등으로 한다.

②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로운 시민이 된 때
- 2.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도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로운 시민이 된 때

제4조(위원회 심의) 의로운 시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의로운 시민의 인정에 관한 사항
- 2.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
- 3.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그 가족 등을 포함한다)은 그 주소지 또는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장에게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의 결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에 의로운 시민 인정을 결정해야 한다.

제6조(결정통보 등) ① 시장은 제5조제5항에 따른 결정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한 때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이나 가족 등에게 의로운 시민 증서를 내줄 수 있다.

제7조(특별위로금의 지원) ① 시장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상자 예우 및 국가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망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

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부상자 및 피해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법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300만원 이하

③ 특별위로금은 의로운 시민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로운 시민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1명에게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세부지원 규정은 시장과 구청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
3. 광주시보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공적게재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명절(설, 한가위)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4. 그 밖에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선정취소) ① 시장은 선정된 의로운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정 신청한 의로운 행위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의로운 시민이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어 선정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로운 시민에 대한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7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으로부터 지급한 특별위로금을 환수하고, 제8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도 취소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특별위로금을 반환해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0조(기록보존) 시장은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에 따라 결정된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다만, 제7조제2항의 특별위로금은 조례 시행 후 법 제5조에 따른 인정시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광주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제4조 각 호의 심의사항

1. 제안 이유

-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 · 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 하여 여성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구현을 위하여 광주여성재단 설립 · 운영
- 인권도시 광주 위상에 걸맞게 세대와 계층을 넘어 지속가능한 지역여성정책 연구하고 현실화 시켜낼 수 있는 소통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 · 개발하고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 제 32조에 따른 광주여성재단 설립 (안 제1조)
- 광주여성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여성재단의 설립 ·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조례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2조)
- 여성재단 설립 ·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성 근거, 예산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재단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6호)
-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시설 및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7조)

- 시장은 재단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업무·회계·재산 등의 검사, 공무원을 파견 할 수 있음(안 제9조,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 여성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 재단 출연금 등 2011년 본예산에 30억 확보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10. 11. 25.~ 12. 6) 결과 : 제출의견 없음

광주광역시 광주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 및 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광주여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 ① 광주여성재단(이하 “여성재단”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여성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은 「민법」 및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여성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개발
2. 성(性) 인지적 정책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 여성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4. 여성인권 연구, 여성의 리더십 향상 및 양성평등 교육
5. 지역전문여성 네트워크 구축 및 여성문화 역량강화 사업
6.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
7. 여성·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광주 광역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여성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재산 및 운영경비) 여성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광주광역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여성관련 단체·법인·기관·개인 등의 출연재산
3. 그 밖의 운영 수익금

제5조(출연금 등)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재단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여성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여성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여성재단의 사업연도는 광주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여성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여성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여성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여성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여성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여성희망포럼 설립 및 지원 조례」는 2011년 6월 1일 부터 폐지한다.

1. 제정 이유

-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충청북도지사는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여 건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 직속의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
-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품질검수 위원은 건축,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6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품질검수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검수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3조)
- 아파트 품질검수단의 기능으로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 자문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아파트 품질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 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 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파트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실한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아파트 품질 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의 품질 검수를 통하여 건실한 아파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도에 아파트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검수단은 6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수반은 해당 아파트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아파트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건축·구조·시공·설비·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군수나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도지사는 아파트 품질검수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 검수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파트 구조, 단지내 조경, 실내 내장·가전, 난방, 안전방재 등의 시공 상태 자문
2. 아파트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
3. 아파트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
4. 그 밖의 아파트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5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중 시장 군수가 요청한 아파트로 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6조(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자료의 요구 등) 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군수가 승인한 분양아파트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검수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안 이유

- 의원의 입법 발의 및 전라북도 하천유역의 주민참여형 물관리를 통한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안정적인 물 자원의 확보, 물 자원의 활용에 필요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주민참여형 물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명시(안 제2조)
- 나. 추진위원회 구성내역 및 분과위원회, 자문단, 민관공동사무국, 하천네트워크의 설치근거 마련(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다. 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하천유역의 주민 참여형 물관리를 통한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건강한 물 생태계의 유지, 안정적인 물 자원의 확보·활용에 필요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라북도 물환경네트워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주민 참여형 물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사업 등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라북도 물관리의 기본비전과 전략수립에 관한 연구 및 자문사항
2. 하천유역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전라북도 물환경 관리를 통한 수질저감 실천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4. 하천유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5. 새만금 물관리의 예측 및 분석에 관한 연구 및 자문사항
6. 그 밖의 새만금 물관리를 위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분과위원회, 자문단, 민관공동사무국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공동위원장) ① 추진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는 민간대표 1명(이하 “민간위원장”이라 한다)으로 공동위원장을 둔다.

② 공동위원장 중 추진위원회의 상임대표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로 하며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추진위원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간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분과위원, 만경강, 동진강유역 기초자치단체 부시장(또는 부군수), 전라북도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등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제2조 각 호들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지닌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은 분과별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분과위원은 추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 ①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별도로 10명 내외의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역대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 인사,물관리 추진 및 물 관련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민관공동사무국) ①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민관공동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 민간위원장, 위원회(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등) 등을 지원하고 추진위원회의 사업전반을 관리 및 운영하되, 사무국에는 5명 내외의 사무국장, 하천네트워크 간사와 사무직원 등을 배치 및 지원한다.

③ 사무국장은 탁월한 물관리 역량 및 사회적 갈등의 조정역량을 지닌 민간인사중에서 추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무국장은 추진위원회의 간사 업무를 수행하고 하천네트워크 간사 등을 위촉하고 관리한다.

⑥ 추진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사무직원은 전라북도 물환경 관련부서 공무원 중 소수의 범위 내에서 파견토록 할 수 있다.

⑦ 사무직원은 추진위원회의 지원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하천네트워크) ① 조례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 산하에 지역별 「하천네트워크」를 설치한다.

② 하천네트워크는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기업, 행정(의회), 교육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제10조(사업) ① 조례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민관 공동사무국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분과위원회, 모임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평가) ① 지사는 추진위원회의 활동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하며, 지사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종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을 설정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실비변상 등) 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규정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약)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15조(유권해석)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59
2.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돕는다 62
3. 알고 싶은 행정기관 정보, 클릭 한번으로 내 손에 64
4. 구제역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66
5. 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68
6. 숨어 있는 미환급금, 한번에 찾아낸다 71

1.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행정안전부는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한다. 조기집행의 목표는 '11년도 상반기 중 대상사업*의 57.4%인 84조원이다.

* 대상사업 : '11년 지방예산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146조원

- '11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및 내수 증가세에 따라 5% 수준의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으나,
- 연도중에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낮은 상저하고*의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변동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상반기에 재정지출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한국은행전망 : 상반기3.8%, 하반기5.0% /
금융연구원 전망 : 상반기3.9%, 하반기4.8%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에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되, 낭비요인은 극소화하고 파급효과는 극대화하기 위해,

첫째,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일자리·서민생활안정·SOC사업*등에 대해서는 특별

히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 일자리 사업 : 고용서비스 지원, 실업·재직자 훈련, 사회적 서비스일자리 등

서민생활안정 : 긴급 경영안정, 소상공인 지원, 창업보육 센터 지원 등

SOC사업 : 도로공사 등 각종 사회간접시설

둘째, 최종수혜자인 지역주민, 소·상공인, 기업체 등이 지방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 중심의 실적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집행 실태점검반」을 운영하고, 주민의 예산 낭비 신고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활성화하는 등 지방재정의 내실있는 집행으로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 한편,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첫째,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차입을 하는 경우 이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1년도에도 일시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보전하되

그 규모를 지난해 보다 다소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 2010년도 2% 보전

둘째, 지방에서 자금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조속히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조기집행 실적은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년도 보다 확대하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맹형규 행정안전부장은 “조기집행의 정책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함께 지방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전통시장 활성화 적극 돕는다

- ◆ 00부 정책부서 이모 과장은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던 차에 “공무원맞춤형 복지비 일부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현물로 지급받고, 가까운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 직접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
- ◆ 00부 김모공무원은 “내년 셋째 출산예정인데 공무원 맞춤형복지비에서 출산시 축하금으로 3백만원을 받고 둘째자녀부터는 복지비용도 배로 증액된다고 하니, 이러한 제도가 늦게나마 마련되어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자녀를 둔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2011년부터 이를 시행한다.
- *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는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로 자기계발, 여가활용 등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임 ('05년 중앙, '06년 지방)
- 우선, 공무원 맞춤형복지비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적극 권장하여 전통시장 매출증대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친서민 정책기조가 서민들에게까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질 수 있도록

- 중앙부처의 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맞춤형 복지비로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도록 의무화하고
- 중앙부처의 장은 기관 여건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 일부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 맞춤형복지 예산(‘10년) : 국가공무원 5,480억, 지방공무원 3,617억

- 또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가족점수 확대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 맞춤형복지비 가족점수 배정시 자녀의 경우, 둘째자녀는 100p(10만원), 셋째 자녀부터는 200p(20만원)을 배정하고,

* 맞춤형복지비로 현재 자녀 1인당 일률적 50p(5만원) 배정

** 1점당 1천원

- 셋째자녀 이상 출산 시 1회에 한해 출산 축하금으로 최대 3000p(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했다.
-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은 직접 전통시장 등 정책현장에서 사용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수렴 등 현장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 데 의미가 있다”라며,

-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권장 제도화를 통해 매출이 대폭 증가되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공무원 맞춤형복지 제도상 국정현안 지원 등 필요할 경우 즉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알고 싶은 행정기관 정보, 클릭 한번으로 내 손에

- ◆ 평소에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A씨는 거주지에서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 발생량을 알고 싶었으나 해당되는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몰랐다. 관련된 정보를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 ◆ A씨는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작성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Q) A씨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는 없을까?

- 위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1년 1월 3일부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의 소재를 ‘정보공개시스템 (www.open.go.kr)’에서 일괄적으로 검색·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그간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정

기관의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하여 정보의 소재를 파악(know-where)한 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했다.

- 하지만 이제는 정보공개시스템 한 곳만 방문하면 418개 행정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One stop service)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도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전에는 162개 행정기관의 정보에 한해서만 검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대다수 중앙행정기관(38개)과 지방자치단체(186개), 그리고 전체 교육청(194개)으로 확대되어 418개 기관의 정보목록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 아울러, 검색방법도 『키워드 검색』에서 기관별·일자별 검색과 자연어·유의어 검색 등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 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검색시간도 평균 3초에서 0.6초로 대폭 단축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다.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2006년 4월 인터넷 온라인 정보공개 서비스를 시작하여 청구 건수가 2006년 15만 1천건에서 2009년 39만 8천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 현재 1,399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의 정보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에서부터 접수, 결정통지, 수수료 납부, 자료열람 등을 거쳐 온라인으로 원스톱 확인할 수가 있어 이용자의 편의가 대폭 증진되고,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향후에는, 1,000여개 주요 공사·공단의 정보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수수료도 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공개안내 등 국민이 편리하게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 행안부, 구제역 축산농가에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

- 행정안전부는 구제역으로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지원기준을 수립, 시도에 시달(1.3)하고, 적극적인 시행을 독려했다.
-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 돼지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축사 등 가축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가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

쳐 감면된다.

※ (‘10.12.31. 기준) 5개시도 31개시군 2,385농가, 축사시설
145만㎡

-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조치를 실시하며, 기간은 6월 이내로써 1회 연장이 가능하다.
-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은 3개월 이내(최대 9월이내 재연장)로 납기가 연장된다.
- 맹형규 장관(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지금은 구제역으로 인한 국가재난 상황”이라며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5. 중소·지역업체 지원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행정안전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계약예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계약예규는 「지방계약법령」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규정한 세부기준으로써 이번에 개정되는 예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8개 예규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소·지역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최근 공사 발주물량이 급감하면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율이 감소되고 있어 시설공사의 시공실적 평가기준을 약 20% 정도 낮추고*

* (예시 :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공사) 최근 3년간 실적을 종합건설업의 경우 1.8배 → 1.5배, 기타 공사업종은 1배 → 0.8배로 완화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의 만점 기준을 업계 평균의 상위 40% 수준으로 완화하여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 또한,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물품구매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고,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제도*를 기존 건설공사 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전체 공사와 자재·장비대여업체에 까지 확대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에서는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지방계약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적격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기존 재무평가방식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는 과거 1·2년 전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업체의 정확한 경영상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종합평가방식(재무평가 30% + 신용평가 70%)을 도입하여 10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시설공사에서 기술자보유현황에 대한 평가를 기존 종합건설업에서 전문·전기·소방 등 전체 공사업종으로 확대한다.
- 이밖에도 물품구매 입찰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인도 평가항목과 점수를 조정하고, 이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는 등 평가기준을 보완하였다.
-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다.
- 지난 7.26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대보증인제 폐지, 입찰공고시 재공고 및 정정공고 기준마련, 수의계약 사유 조정, 계약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일 조정, 원가계산관련기관의 인력요건을 강화하는 등 계약관계자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의 통일적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국가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한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은 중소·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와 계약의 공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를 계기로 자치단체 계약에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건실한 업체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따뜻하고 공정한 지방계약제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6. 숨어 있는 미환급금, 한번에 찾아낸다

- 그간 정부의 다수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미환급금의 경우, 개별 기관에서 따로따로 조회·신청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이를 해소하고자 행안부는 12월 23일부터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미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한다.
- 이번 서비스는, 행정정보공유추진단이 올 11월 말, 각 부처에 있는 미환급금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연계하면서 가능해졌다.
- 국민들은 개별 기관이나 홈페이지에 방문 없이 ‘민원24’에 접속하여 조회하는 것으로 미환급금 관련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 이번 「통합서비스」는, 국세 환급금(국세청), 지방세 과오납금(행정안전부), 송달료 및 보관금(대법원) 등 3개 미환급금 정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 3개 미환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9월 현재 ‘국세 미환급금’은 연간 28만건에 153억원, ‘지방세 과오납금’이 연간 294만건에 330억원, ‘법원 송달료 및 보관금’이 237만건에 1,100억원 등 총 1,5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는 이동통신 전화 미환급액(방송통신위원회), 휴면주식 및 배당금(금융위원회), 건강보험 과오납금(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더불어 2011년 말에는 조회 뿐 아니라 환급신청과 결과조회까지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 장광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추진단장(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환급금을 찾기 위해 행정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알지 못해 누락된 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서비스 개시 소감을 밝혔다.

201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세제 74
2. 공정거래·금융·조달 77
3. 산업(중소기업·특허) 77
4. 환경·국토 78
5. 보건복지·여성 82
6. 고용·노동 84
7. 법무·행정안전 85
8. 통일·국방·병무 87
9. 교육·문화 87
10. 농식품·산림 89

1 세 제

1. 지역별·기업규모별로 임투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차등화

- '11.1.1일부터 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받음
- 다만,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를 적용 받음

2.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 '11.1.1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자녀 2명인 경우 연 100만원(기존 50만원), 자녀 2인 초과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됨

3.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확대

- '11.1.1일부터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 및 저축장려를 위해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400만원(기존 연 300만원 한도)으로 확대됨

4. 기부금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

- '11.1.1일부터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①개인기부금 30%(기존 20%) ②법인기부금 10%(기존 5%)로 확대되고
- '11.7.1일부터 기부금 구분체계가 법정·지정의 2단계(기존 법정·특례·지정의 3단계)로 간소화 됨

5.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 '11.1.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법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6. 신용카드 등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

- ☐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기업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발행(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10.12.31일에서 '12.12.31일까지로 연장됨

* 우대내용

구 분	기준공제		우대내용 ('12년말까지 일몰기한 연장)	
	공제율	공제한도	공제율	공제한도
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	결제금액의 2%	연 500만원	2.6%	연 700만원
이외 개인사업자	결제금액의 1%	연 500만원	1.3%	연 700만원

7.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설

- ☐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신설
- 당해 연도 중에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8. 통합 취득세 분납제도 3년 한시 도입

- ☐ '11.1.1일부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 후 60일 이내 “통합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 이로 인한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가중을 경감하기 위해 취득세 분납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 30일이내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11~'12년은 세액의 50%, '13년에는 세액의 70%를 선납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60일)내 납부

9.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강화

- '11.1.1일부터 지방세 징수를 원활히 하고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강화
 - (중전) 지방세 채납액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채납자에 대해 관보·공보게재, 정보통신망·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
 - (개선)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채납액을 3천만원으로 하되, 3천만원~5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한선을 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10.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에 대해 지방세 감면시한 연장

- '10년말 감면이 종료되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이 '11.12.31일까지 연장됨
 - 다만, 서민층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하여 9억원 이하 1주택,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은 현행대로 감면 혜택을 적용하되
 - 9억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이번 감면연장 대상에서 제외

11.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통한 직접 신청

- '11.1.3일부터 세관에 방문하거나 관세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Uni-pass)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통관고유번호* 등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변경

* 국내수출입업체의 고유번호

2 공정거래·금융·조달

1.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 '11.1.14일부터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사업양도시 조치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시 조치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고
 -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영업표지 변경(간판 등)에 따른 비용, 재고처리방안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계약 즉시 해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가맹계약 피해예방을 위한 법규를 개선

2.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 집행시 “지역업체 참여배점제(최대 5점 부여)”를 도입하고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을 상향(12%→16%)조정('10.10.22일부터 기실시)

3 산업(중소기업·특허)

1.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완화 및 근로기간 산정방식 개선

-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산정을 보증서 이용기간에 따라 년수차감 적용하여 보증료 부담이 완화되었으며('10.12월부터 기실시)
 - * 사업자 : (현행) 적용년수 2년~5년 → (개선) 적용년수 16개월~45개월
 - * 근로자 : (현행) 적용년수 3년, 5년 → (개선) 적용년수 2년, 3년
- 근로자의 햇살론 신청시 보증신청일 현재 근로중인 자로 휴직(실직 포함)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최근 3개월간 매월 10일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10.11월부터 기실시)

* 기존에는 3개월 이상 근속을 조건으로 하여 일시적인 실직(구직기간,
출산휴가 등)자의 이용이 제한되었음

2.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기능 확대

□ '11.1월부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서 경제적 약자 계층을
위한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비용을 지원

* 기존에는 상담 및 출원관련 서류작성 지원서비스만 제공

4 환경·국토

1.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제도 시행

□ '11.1.1일부터는 석면과 관련된 직업력이 없음에도 일상생활
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구제급여가 지급됨

2.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 변경

- '11.1.1일부터 폐기물 재활용 분리배출표시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
- 도안의 종류를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 플라스틱 관련 도
안한글화, 컬러인쇄시 품목별 색상 도입 등 개선
 - 다만, 기존 제품·포장재에 대해서는 최대 1년 6월의 준비
기간을 부여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확대

- '11.1.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의 연면적 기준이 430m² 이상으로 확대되어(기존 860m² 이상) 영유아의 건강보호가 강화됨

4. 먹는물에 대한 관리 강화

- '11.1.1일부터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물의 유해물질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강화(납:0.05→0.01mg/L, 비소:0.05→0.01mg/L 등)하고, 항목을 신설(57개→58개)
- '11.3.23일부터 수질기준 초과 등 법령위반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위반내역(제품명·업체명, 위반내용, 제조·유통기한 등)공표가 의무화 됨
 - 시·도지사는 기준·규격을 위반한 제품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반내역이 공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5.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

- '11.3월(예정)부터는 단독세대주라도 ①월채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②전용면적 4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서는 전용면적 50m²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음

6. 도시형 생활주택 규모 확대

- '11년 상반기부터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고자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150세대 미만으로 한정하였던 기준을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

7. 하천점용허가 점용료 인상비율 상한선 제한

- ☐ '11.1.1일부터 하천점용허가 점용료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5%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하천점용료의 인상률을 전년도 대비 5%로 제한

* 현재 하천점용료는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상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지가의 급격한 상승시 부담이 가중되었음

8. 경작목적 토지점용허가권의 양도 등 금지

- ☐ '11년 하반기부터는 하천내 경작목적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권을 양도하거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점용·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9. 연접개발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획적 성장관리방안 도입

- ☐ '11.3.1일부터 연접개발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폐지하고 개발행위 허가절차 등 관련 제도를 보완

10.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모바일서비스 도입

- ☐ '11.6.30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토지이용계획열람 등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할 수 있게 됨

11.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 선택권 확대

- ☐ '11.1월부터 단일 카드사(신한카드)에 의해 운영 중이던 택시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추가되어 택시 운송사업자의 선택권이 확대됨

12. KTX 전라선(익산~여수) 운행 개시

- '11.8월(예정)부터는 여수, 순천역에서 직접 KTX를 이용할 수 있고, 소요시간도 약 19분이 단축(익산~여수 기준)됨

13.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

-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청원·연기(중부권)와 칠곡(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됨에 따라 '11.1월부터는 전국 5대 권역 모두에서 내륙물류기지를 본격 운영하게 됨

14. 단일선체 유조선 운항금지

- 유조선에 의한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5년 앞당겨 '11.1.1일부터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을 전면 금지함

* 선체 외관을 한 겹으로 만든 제레식 유조선으로서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로 선체가 손상될 경우 기름이 쉽게 유출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적선 뿐만 아니라 외국 단일선체 유조선도 우리나라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운항할 수 없게 됨

15.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

- '11년 상반기부터 항공교통사업자인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 정부는 항공교통사업자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보고서로 발간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예정

16. 항공기 특별감항증명 제도의 시행

- '11년 하반기부터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특별감항증명 제도를 시행할 예정

* 무인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기 개발에 따른 시험비행 및 산불진화, 농업용 등

17.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 수립·시행

- '11.6월,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시행됨
 - 전국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신연안 관리제도에 대한 기틀 마련 등을 주내용으로 함

* 연안을 종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해 10년마다 계획 수립

5 보건복지·여성

1. 신생아, 장애인 등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1년부터 골다공증 치료제·당뇨 치료제·항암제 급여 확대, 최신 방사선 치료기법 및 최신 암수술 급여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치료제 급여화 등 중증환자, 신생아, 장애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

2.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행

- '11.1.1일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어 4대 사회보험료를 1장의 통합고지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됨
 - 또한 통합보험료의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여 무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탈에서 납부가 가능

* 다만, 자격관리·부과·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3.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확대

- ☐ '11.1.1일부터 유소견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었던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지원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 '11.1.1일부터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확대

종전	개선
○ (일반) 회당 150만원 범위내 지원	○ (일반) 회당 180만원 범위내 지원
○ (기초) 회당 270만원 범위내 지원	○ (기초) 회당 300만원 범위내 지원
○ 3회까지 지원	○ 4회까지 지원 * 단 4회차 지원은 100만원 범위내 지원

5.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

- ☐ '11.1.24일부터 국제수준의 의료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인증전담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 가능
-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청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기관 인증을 실시

6.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 확대

- ☐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월소득 50만원에서 53만원)되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개소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복지혜택이 확대됨

* '11.1월부터 전남대병원 및 단국대치과병원에서 실시

- 또한 학교·보육시설, 병원, 사업장 등 100인 이상 시설에 대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의무가 부여되며, 방송 및 전화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됨

7.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

- '11.3.1일부터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36개월미만 아동에게 월20~10만원을 지원(기존 24개월 미만, 월10만원)
 - * 12개월 미만: 월20만원 지원, 24개월 미만: 월15만원 지원, 36개월 미만: 월10만원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맞벌이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함
 - '11.3.1일부터는 4인가구 기준 450만원(기존 258만원)인 가구까지 보육료를 전액지원 받게 되며
 -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전액 지원받게 됨

6 고용·노동

1. 근로여건 개선

- '11.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10.12월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11.1월부터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4,320원으로 인상(10년 4,110원) 되는 등 근로자의 근로여건이 개선됨

2. 취업지원제도 확대

- '11년에는 전국 주요지역에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등이 주체가 되어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취업아카데미」*를 설립·운영할 예정
- '11.1.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기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요건이 완화되며 지원금액도 인상됨
 - 특정 계층(장기실업자, 고령자 등)이 일정 실업기간이 지난 후 고용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취업할 경우 지원금을 주었으나, 알선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금도 대상자 관계 없이 연 650만원으로 상향조정

7 법무·행정안전

1. 일정조건 하에 복수국적을 허용하되 국적이탈은 제한

- '11.1.1일부터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일부 외국인*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등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계속 유지(=복수국적 보유)할 수 있게 됨

* 우수 외국인재, 특별공로자,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65세 이상 영주귀국 동포 등

2.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확대 등

- '11.4.16일부터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

* 기존에는 19세 미만 대상 성범죄를 지저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공개

- '11.7.24일부터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약물 및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

3. 119 안전서비스 확대

- 각종 재난·사고 관련 긴급전화번호 11종*을 119와 연계하여
 - 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에 이첩하거나 3자통화 등을 통해 쉽고 신속한 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난·사고 시스템을 개선

* 수도(121), 환경(128), 이주여성상담(1577-1366), 청소년상담(1388), 여성긴급(1366), 가스(1544-4500), 지역도시가스(개별), 자살(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재난(1588-3650)

4.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시·군·구로 확대 (시행일 : 2010.11.15)

-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시·군·구의 장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
 - 출입국관리사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 즉시발급 가능

8 통일·국방·병무

1. 국가유공자 보상금 등 인상

- '11.1.1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10년 대비 4~7% 인상하여 지급하게 됨

2. 징병검사 체계 개선

- '11년 징병검사부터, 대상자 전원·모든 과목을 검사하던 체계를 신체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만 받고,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해당 과목 정밀검사 후 판정을 받도록 개선

* 기본검사: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시력검사, 신장·체중·혈압측정

3. 입영의무 면제연령 상향조정

- '11.1.1일부터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고, 기피자·사위행위자 등의 면제연령을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조정

9 교육·문화

1.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신설

- '11년도 1학기부터 소득 5분위 이하, 성적 A⁰이상인 대학생 중 1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하며
 - 특히, A⁺이상인 대학생 중 1,000명에게는 연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여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특성화고 학생 장학금 전액 지원

- ☐ 11년도 1학기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은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구 전문계고) 재학생 약 26.3만명에게 1인당 연 평균 120만원씩 총 3,159억원을 지원할 예정

3.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속한 피해구제 실현

- ☐ '10.12.11일부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
 - * 콘텐츠사업자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콘텐츠 거래 및 이용에 관한 분쟁조정

4. 여행업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 개선 등

- ☐ '11.1월부터 기존 일률적으로 규정하던 여행업의 보증보험 가입금액 기준을 전년도 매출액에 비례하도록 개선하고
- ☐ 기획여행을 실시할 경우 추가로 기획여행과 관련한 사고에 대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개선

10 농식품·산림

1. 농지연금 시행

- '11.1.1일부터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65세 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소유농지 3만㎡이하인 농업인은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지급받게 됨

*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

2.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11.1.1일부터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 및 식용란(계란)에 까지 포장유통의무가 전면 확대 실시됨

3. 술 품질인증제 실시

- '11.1.1일부터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
 -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품질인증기관에서 심사 후 품질인증서 및 품질인증마크 부여(상시 신청 및 심사)

4. 농약등록 신청, 아무 때나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 '11년부터 기존 매분기말에만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농약 등록을 해야 했던 절차를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농약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민원처리포털(<http://minwon.rda.go.kr>)을 구축

5.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

- '11.7.1일부터 숲길훼손과 타인의 건조물·농작물 손괴(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오물 투기행위·표시판 손괴(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 신설

6.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운영

- '11.1.1일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e숲으로」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을 구축하여
 - 전자상거래 행정대행, 판매대금 관리, 배송 확인,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 www.esupro.co.kr 또는 www.esupro.com

행복한 책 읽 기



도서명 : 행복한 고집쟁이들

저자명 : 박종인

출판사 : 나무생각

출판년 : 2010년

페이지 : 292

가 격 : 13,800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알짜배기 인생들

세상이 점점 삭막해지고 있다.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모든 이의 가슴을 울리며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다.

저자 박종인은 허명과 허세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삶을 알토란같이 일구어가는 사람들, 소리 없이 세상에 따뜻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을 찾아내었다.

이들은 서해 바닷가 근처, 강원도 산골짜, 서울의 어느 뒷골목, 한라산 기슭 혹은 일본의 어느 곳에 살고 있었고, 비록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지만 꿈과 자부심을 위해 고집스럽게 한 길을 걸어 세상에 유익한 열매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저자는 그들의 모습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내어 수년 동안 신문에 연재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책으로 엮어내며 묻는다.

이들만큼 아파본 적 있느냐고. 이들만큼 뜨거워본 적 있느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거든 이들의 삶을 보라

“한 개를 나누면 두 개가, 두 개를 나누면 그게 네 개가 되어 나뉘진다. 연결에 연결, 그게 사는 원리다.”

15년 동안 독거노인과 복지단체에 소금 포대를 기부하고 있는 강경환은 13살에 발목지뢰로 두 손을 몽땅 잃고 손뿔뿔이로 소금밭을 일구는 소금장수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분, 장애인 수당을 포기하고 일반인도 고되다는 염전 일을 하며 소득의 10퍼센트를 기부하고 있다. 자선단체를 만들어 더 많은 나눔을 꿈꾸고 있다.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안 이루어지면 그건 노력을 하지 않은 거고. 비록 가난했지만 언제나 꿈꾼 만큼 노력했다.” 여섯 살에 척추가 부러져 척추 장애를 입은 박공숙은 힘들고 슬플 때마다 노래를 불렀다. 식당일을 하며 노래를 부르고 또 불렀고,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전수자가 되었다. 이제 하얀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춤추고 노래한다. 관객들은 그 노래의 아름다움에 놀라고 불편한 그의 몸을 보고 더 놀란다.

“30년 넘게 자장면을 만들었다면, 그 자장면에는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학교 때 주방보조로 시작한 자장면 인생 이문길은 자장면집을 운영한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손

님은 삶의 목표가 아니다. “지구촌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단 한 그릇 먹어보고 눈물을 흘려줄 음식을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드는 것.” 오직 이것만이 목표이다. 100퍼센트 수타가 원칙이며 어린 손님을 위해 술은 팔지 않고 배달은 반경 50미터 안. 돈의 노예가 되기 싫어 수많은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며 고집스럽고 행복하게 자장면을 만들고 있다.

팔 없이 온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석창우, 원팔 하나로 아름다운 한복을 만드는 이나경, 일본에 가서 조선의 옷칠을 복원한 옷칠장이 전용복, 정성을 파는 양복장이 이경주, 근이영양증으로 14년 동안 집안에만 갇혀 산 시인 고 김민식까지……. 이들 앞에서 몸이 아프다고, 돈이 없다고, 삶이 힘들다는 투정은 말 그대로 투정으로만 들릴 뿐이다. 어떠한 역경이 와도 꿈과 자부심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이들이 “배운 게 없어서”라고 말을 아끼며 무심코 뱉은 한마디들은 그대로 삶의 진리다.

“팔이 없으니까, 온몸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러다 보니 그 힘이 붓으로 전달되고 화선지에 표현되는 거 아닐까.”－팔 없는 화가 석창우

“손은 수많은 도구 중 하나다. 입술도 무릎도 발가락도 훌륭한 도구지.”－원팔 하나로 이룬 한복 미학 이나경

“억울해서라도 비뚤어지게 살지 말자고 다짐했다. 그 혹독한 시절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가장 큰 동력이 됐다.”－나는 조선의 옷칠장이 전용복

“평소에 선친께서 늘 말씀하신 것이 정성무식精誠無息 즉 정성은 끝이 없다는 것이었다.” - 3대를 잇는 종로 양복장이 이경주

“이게 중요해. 중심 잡는 거. 신발이건 인생이건 세상이건 중심을 꼭 안 잡으면 불량품 되는 거다.” -축구화 수선 47년 김철

“지금 처져버리면 영원히 못 일어난다. 죽을 때까지 도전해야지.” -12대째 활 만드는 권무석

“내일 아침에 해가 얼른 떴으면 좋겠다. 빨리 망치질하게.” -제주 석장 장공익

전설의 배우이 신영수는 말했다. “나 같은 사람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니여. 짐작컨대, 다들 못살지?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 일 하고 살지?” 그러나 삶이란 요령을 배우는 것이 아닌 뜨겁게 살아내는 것임을 증명한 이들에게 세상은 감동하고 고개를 숙인다. 이들이 있기에 세상은 살 만하다고,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기자이고 작가이며 사진가인 저자의 멋진 작품사진들이 수록되어 그 장엄한 삶에 품격을 더한다.

메 모

의 정 정 보

❖ 발 행 일 : 2011년 1월 10일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전화 (042) 606-5021 / 팩스 (042) 606-5029